

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유 용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2호

「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노약자·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

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동수도요금, 공공하수도사용료, 물이용 부담금 등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대상을 변경하고,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